

의안번호	2207919
의 퇴 인	김용만의원
회 답 일	2025.1.17.
추 계 번호	25E023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2024년 대비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
추가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 적용 - (신설) 2025년(1.1.~12.31.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4년(1.1.~12.31.)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(연간 100만원 한도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공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4년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5%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,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2024년 대비 2025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한 소득세 신고자의 수, 해당 인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의 자료 필요
 -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소득세 신고자의 수,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, 결정세액 등의 자료 필요

- 그러나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
 -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국세통계연보는 2022년 귀속 총급여액 규모별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최종 소득공제금액 집계자료만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소득세 신고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
 - 2021년, 2022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나, 2020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대책 등에 따른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소비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증가분을 확인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